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 7. 5. (수)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윤 홍 창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7년 6월 26일

○ 회부일자 : 2017년 6월 28일

3. 개정이유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동일하게 하고 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임 규정을 마련하며,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정기회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1항)

나. 위촉직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교육행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 2명, 도지사 2명 이내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2호)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과 사임,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는 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라. 정기회의 개최를 8월로 변경함(안 제7조제2항)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청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각 2명으로 동일하게 구성하고,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8월로 변경한 것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교류와 소통의 공정성을 기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